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7호 2022. 1. 26(수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남원시공고 제2022-180호 남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의 공고----- 1
- 남원시공고 제2022-192호 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----- 3
- 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2-180호 남원시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----- 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22-180호

남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의 공고

남원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하고, 관련도서를 남원시청 도시과(☎ 063-620-646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남 원 시 장

2022년 01월 28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2. 사업이 명칭 및 규모, 위치

사업명	위치	시설명	등급	노선번호	사업구간	사업량(m)	착수일	시행청	비고
							준공일		
시청로 정비공사	남원시 도통동 향교동	도로	대로	1-2	향교동 150-1 ~ 도통동 438-3	L=736 B=35	2019.12.20. 2020.12.17.	남원시	
신정대로 개설공사(1구간)	남원시 신정동 왕정동	도로	대로	1-7	신정동 421-2 ~ 왕정동 577-12	L=920 B=25	2018.06.27. 2020.12.23.	남원시	
신정대로 개설공사(2구간)	남원시 신정동 왕정동	도로	대로	1-7	왕정동 577-12 ~ 금동 437-2	L=585	2019.04.19. 2021.06.25.	남원시	
			중로	1-2		L=186			
			소로	2-138		L=180			
교룡 대로 개설공사(1구간)	남원시 향교동	도로	대로	1-10	2호광장 향교동 232-9 ~ 향교동 767-1	L=985m B=35m	2018.06.27. 2021.12.20	남원시	
새터 중로 개설 공사	남원시 신정동 조산동	도로	중로	1-11	남원시 신정동 304-1 ~ 남원시 조산동 433-9	L=396m B=20m	2018.06.27. 2021.03.17.	남원시	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남원시장

나. 주 소 :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

4. 관련도서 : 실음생략. 끝.

남원시 공고 제2022-192호

『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을 개정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을 정비하고, 심의사항을 변경하여 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·규칙심의회 기능 변경 (안 제3조)

- ‘주민 조례 제·개정, 폐지 청구 요건 확인’ 심의사항 삭제
(주민조례 개·폐 청구제도 업무가 시장→시의회 의장에게 이관)
- 지방자치법 제20조 신설에 따라 ‘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검토’ 심의사항 추가

나. 주민 조례 제·개정, 폐지 청구 시 구성한 위촉직 위원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2조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1. 26. ~ 2022. 2. 15. (20일간)

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2년 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감사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감사실

다. 의견 제출 방법

: 서면, 이메일(wldus3787@korea.kr), fax(063-620-6781) 및 직접방문 등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(☎063-620-602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붙임 : 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.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2. 1.

제 출 자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: 감 사 실 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을 정비하고, 심의사항을 변경하여 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·규칙심의회 기능 변경 (안 제3조)

- ‘주민 조례 제·개정, 폐지 청구 요건 확인’ 심의사항 삭제
(주민조례 개·폐 청구제도 업무가 시장→시의회 의장에게 이관)
- 지방자치법 제20조 신설에 따라 ‘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검토’ 심의사항 추가

나. 주민 조례 제·개정, 폐지 청구 시 구성한 위촉직 위원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」, 「남원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1. 1. 26. ~ 2. . (20일간)

- 결 과 :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원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위원은 국·소장, 기획실장, 감사실장이 된다.

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남원시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시 검토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위원은 국·소장, 기획실장, 감사실장이 된다. 다만, 제3조제5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·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촉직 위원은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가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고,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제3조(기능) <u>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<u>주민의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,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위원은 국·소장, 기획실장, 감사실장이 된다. <단서 삭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3조(기능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5. <u>남원시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시 검토</u></p>

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2 - 10호

공 고

남원시에서 계획 중인 공공하수도(공공하수처리시설)의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 구역을 변경 하고자 하수도법 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(사용의 공고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26일
남원시장(환경사업소)

1. 제 목 : 남원시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

2.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변경사항

○ 하수처리구역

구 분	면 적(km ²)		변 경 사 유
	당 초	변 경	
남원 하수처리구역	9.748	10.052 (증0.304)	- 대산면 남원서원초등학교 인근 편입 - 신촌동 신촌마을 편입 - 주천면 용담(윗)마을 편입 - 주천면 안곡마을 편입
인월 하수처리구역	0.919	1.008 (증0.089)	- 인월면 흥부골 자연휴양림 편입 - 인월면 지산(윗)마을 편입

※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금회 변경사항에 한하고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
○ 하수배제방식 : 분류식

3. 공람기간 및 장소

○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(2022. 1. 26. ~ 2. 15.)

○ 공람장소 : 남원시 환경사업소

4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은 「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함.

- 배수설비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는 「하수도법」 및 「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」에 의함.
-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「남원시 하수도사용 조례」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남원시장(환경사업소)에게 신고하여야 함.
- 기타 관계서류는 남원시 환경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 【☎(063)-620-5811】

하수처리구역 결정내역

○ 하수처리구역 설정

(단위 : km³)

처리구역		당 초 (2025년)	변 경 (2025년)	증·감	비 고
합 계		15.359	15.752	(+) 0.393	
공공	소 계	11.427	11.820	(+) 0.393	
	남 원	9.748	10.052	(+) 0.304	변 경
	운 봉	0.76	0.76	(+) -	
	인 월	0.919	1.008	(+) 0.089	변 경
	부 운	-	-	(+) -	
공 동		0.037	0.037	(+) -	
소 규 모		3.895	3.895	(+) -	